



방재기술 평가제도 소개

방재기술평가제도 란?

-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,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

방재기술평가 제도의 목적

- 국가에서 자연재해저감과 관련된 우수한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로 지정함으로써 개인, 단체, 정부기관 등은 신기술을 믿고 사용
- 기술 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 및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,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
 - ※ 행정안전부 에서 방재신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기술 수요자에 대한 신뢰성 증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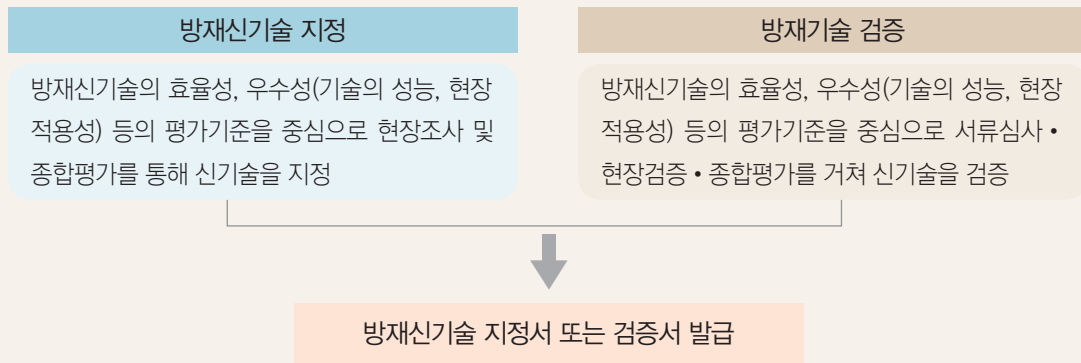
추진경과

- '05.1월 :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제도 도입
- '06.6월 :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전문기관 지정
 - ※ 근거 :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2항
- '12.7월 : 조달청 PQ심사시 개발활용실적에 대해 점수부여
- '12.8월 : 자연재해저감신기술 → “방재신기술”로 명칭 변경
- '14.1월 : 방재신기술 ‘NET’ 마크통합
- '06~17년 현재 :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

신청대상 및 범위

- 국내에서 방재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개인 및 단체로 방재공법에 관련된 기술
 - ※ 국내 최최신기술 입증을 위한 기본 근거자료로 특허 제출 요망

제도의 종류



평가의 절차

- 신기술지정 : ▶ 접수 → 공고 → 현장조사(현장 적용성 등 평가신청서 내용과 일치여부) → 서류심사(전문기관) → 지정 → 우선활용권고(지자체 등)
- 기술검증 : ▶ 접수 → 공고 → 현장조사 → 서류심사(전문기관) → 현장평가(현장시설 시험· 분석 등 성능 평가) → 종합평가 → 검증 → 우선활용권고(지자체 등)


평가기준

항목	인증종류	지정(검증)	보호기간 연장
신규성		• 새로운 기술이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부분을 개량한 기술	-
우수성	기술의 성능	• 기술의 효율성 • 완성도 • 중요도 • 발전성이 있는 기술	• 기술수준(성능) • 중요도 • 안정성 • 경제성
	현장 적용성	• 기존기술과 비교한 경제성 • 안정성 • 시공성유지 관리 편의성 • 법령 위배사항	
활용실적여부		-	• 활용건수, 공사비, 활용범위(지역)
현장평가여부		(검증시)	-

지정신기술의 지원사항

■ ‘NET’ 신기술 마크 사용

인증기술의 표시는 「New Excellent Technology」를 형상화한 신기술인증표시(NET 마크)를 사용



NET(New Excellent Technology) : 신기술인증

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,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

-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
-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증진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

■ 신기술 보호기간

- 신기술 최초 지정 및 검증시 보호기간 3년, 보호기간 연장 시 평가 점수에 따라 최대 4년 범위 내에서 연장

■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입찰

- 방재신기술로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일 경우 수의계약 가능
- 동종분야의 신기술간 제한경쟁입찰 가능

■ PQ 점수 부여

- 조달청 및 공공기관 PQ심사 시 방재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실적에 대해 점수 부여
 - ※ [기획재정부]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
 - ※ [조달청]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

■ 신기술 우선 활용

- 행정안전부 재해복구사업 실시체계 및 사업추진 시 재해 취약성을 고려하여 방재신기술 우선 활용 권고

■ 기타 지원혜택

- “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”에 신기술 단가 반영
-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신청 자격 부여
-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신청시 1차 적합성 심사 면제